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90호 2020. 10. 5.(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690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691호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3
- 사천시 조례 제1692호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8
- 사천시 조례 제1693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사천시 조례 제1694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사천시 조례 제1695호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9
- 사천시 조례 제1696호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사천시 조례 제1697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사천시 조례 제1698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사천시 조례 제1699호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33
- 사천시 조례 제1700호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사천시 조례 제1701호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사천시 조례 제1702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사천시 조례 제1703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43
- 사천시 조례 제1704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 사천시 조례 제1705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58
- 사천시 조례 제1706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 사천시 조례 제1707호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62
- 사천시 조례 제1708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 사천시 조례 제1709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74
- 사천시 조례 제1710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6
- 사천시 조례 제1711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0
- 사천시 조례 제1712호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 90
- 사천시 조례 제1713호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1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51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 98
- 사천시 규칙 제752호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5
- 사천시 규칙 제753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1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92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 120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33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28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69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항공사업자”를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로, “항공사업자에게”를 “항공운송
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에서 항공사업자”를 “범
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사천시에 영업장을 둔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가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재정적 손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기취급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일자·번호·사업범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69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사천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명칭은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6. 그 밖에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의 직원은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 건강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센터운영 관련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으로는 센터 직원의 대표, 센터 이용자 대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센터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와 같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12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69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천시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및 읍·면·동

나. 사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69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대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은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을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를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범죄예방)”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중 “1일 3회 이상의” 를 “청결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식방지를 위하여” 를 “위생관리를 위해”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점검·정비,” 를 “점검·정비하고” 로, “연1회 이상” 을 “주기적인”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리대장의 비치)” 를 “(관리카드의 비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대장을” 을 “관리카드를”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을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 을 “시장” 으로,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를 “경우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위생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 시장이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
는 간이화장실은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별표 1】 <개정 2020. 10. 5.>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0. 5.>

제 호 <h2 style="margin: 0;">유료화장실 신고필증</h2>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여성위생용품		환풍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인)</p>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69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 을 “(관광객 유치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12.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69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와 역사, 문화, 경제구조, 규모 등 제반여건이 유사한 북한 지역을 선정하여 교류 협력할 수 있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의 증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민간의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인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시 소속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의결로 기피 결정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또는 면직할 수 있다.

1.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위하여 경제협력, 사회·문화, 체육·관광 등의 교류 분야별로 위원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제12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시와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시 지원사업
4.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

제16조(보고 및 환수) ①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7조(수당 등) ①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포상 등) 시장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69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2항 중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 <u>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서 1부</u>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①, ②, ③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69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중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를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 75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69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69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사천시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행정차량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위원 및 유공자 표창
2. 설·추석 등 기념일에 위문품 및 기념품 지급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0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0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토지가격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경제국장·세무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과장”을 “주택가격업무 담당과장·토지가격업무 담당과장·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0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표 1] <개정 2020. 10. 5.>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3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복명서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4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	
5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6	기록물 등록·분류·보관 등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7	적십자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모금 홍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9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10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1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2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3	장애인 등록(취소) 및 등급조정(재판정), 신청,접수,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2	
14	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등급 결과 통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15	장애인복지카드 교부(재교부) 및 반환,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16	장애인등록 현황의 기록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18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19	주민세(균등분)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0	주민세(재산분)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1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2	재산세(토지,건물,주택) 및 자동차세 등 과세자료 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3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4	시세 체납액 납부 독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5	시세관련 납세 (과세, 미과세, 징수유예)증명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26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 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 항	「주민등록법」 제2조 「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27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동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부터 제52조, 제77조제8항	
28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 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제8조	
2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 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 반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31	<p>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1. 농지전용신고(동 제외)</p> <p>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p> <p>3. 농지이용실태조사</p> <p>4.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p> <p>5.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p> <p>6. 자경증명의 발급</p>	<p>「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p> <p>「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p> <p>「농지법」 제10조, 제49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p> <p>「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제57조</p> <p>「농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p> <p>「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p>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0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사천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를 정하고, 그 위탁 절차를 규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간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재정 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지역간 균형 분포
5.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 수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8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에서 제1항 각 호를 종합검토 후,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민간위탁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전의 당사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6. 예산지원 내용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휘·감독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대해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0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절기(3월~11월): 09:00 ~ 22:00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2. 동절기(12월~2월): 09:00 ~ 20:00

제12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3.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일부 사용된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에는 사용된 이용권의 차액을 반환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별표 3] <개정 2020. 10. 5.>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	1명 요금

- ※ 1. 이용료 할인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전북 정읍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의령군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0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3년” 을 “5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0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임산부·다자녀 가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출산축하용품 중 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게시자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표 1] <개정 2020. 10. 5.>

출산장려시책 지원 (제4조제1호 지원)

지원내용	상세내역
임신축하용품	○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신부 등록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 첫째 아: 1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2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6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24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36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48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출산축하용품	○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 ○ <u>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게시자를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상품권을 포함한다) 지급</u>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2개월
출생아 복지보험료	○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	○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
<u>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u>	○ <u>시와 협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3만원 이하의 물품(상품권을 포함한다) 지원</u>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 요금 감면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0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로, “사천”을 “사천시”로, “운용·관리”를 “운용 및 관리”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 및 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사천시 지정금고(이하 “시지정금고”라 한다)에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가능금액의 운용·관리)”를 “(사용가능액의 운용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용·관리”를 “운용 및 관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이하” 를 “3천만원 이하” 로, “용자신청자의수” 를 “용자신청자의 수” 로 한다.

-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 을 “기금 업무 담당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 팀장” 을 “기금 업무 담당팀장, 읍·면·동 재무 업무 담당팀장”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분임기금운용관: 읍·면·동장

제10조제1항 본문 중 “운용·관리” 를 “운용 및 관리” 로 “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정성별” 을 “특정 성별” 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각분야” 를 “각 분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차에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 팀장” 을 “기금 업무 담당팀장” 으로 한다.

제1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 중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를 “조례의 시행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0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다목 중 “법 제19조”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재된 주차장의 연 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으로 한정하고, 무료주차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6조제1항” 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법 제19조의13제4항” 을 “법 제19조의13제1항” 으로, “「사천시 주차장조례」 제15조” 를 “「사천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다만, 「건축법」에 따른 공장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제2항제3호 중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을 각각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6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및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제2호 단서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을 각각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②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③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징금의 징수)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설치 신청(변경 설치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표 1] <개정 2020. 10.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주 차 요 금		1일주차권	월 정기주차요금	
	기본(30분)	15분초과		주 간	야 간
소 형	500	250	5,000	50,000	45,000
대 형	1,000	500	10,000	100,000	90,000

- 비 고 -

-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차장 운영시간은 매일 08:00 ~ 20:00까지로 한다.
- 한개 구획은 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점용 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로 하고 대형차는 소형차 이외의 전 차종으로 한다.
-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0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10조의2제4항 중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1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표 2] <개정 2020. 10. 5.>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칭	크 기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주중	주말		
카라반 (스토리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00,000	150,000	200,000	전기이용료 포 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80,000	110,000	150,000	
단체글램핑	12m×9m (16인용)	1동/1일	240,000	360,000	400,000	
일반야영	6m×8m (4인용)	1면/1일	25,000	30,000	35,000	전기이용 불 가
평 상	2.4m×2.4m	1개소/1일	15,000	20,000	25,000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단체글램핑 : 시간당 2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야영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평상 : 시간당 1,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단체글램핑**, 일반야영장은 **1명** 추가 시 1일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표 3] <개정 2020. 10. 5.>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카라반(스토리 하우스), 글램핑, 단체글램핑, 일박야영, 평상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u>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u>		<u>20%</u>	<u>20%</u>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전북 정읍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의령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표 4] <개정 2020. 10. 5.>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 체	시 기	유 형			
이용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이용자 귀 책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의 8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료의 4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료의 6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의 90% 공제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50% 배상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80% 배상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40% 배상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60% 배상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90% 배상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한다.

※ 이용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1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1조 규정”을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전의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전의 단서) 중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이 경우 음식물류 폐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량의 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법 제15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법 제3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해당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의 묶음 표시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되 과도하게 압축하여서는 안 되며, 50리터 규격의 쓰레기봉투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입 전 다른 지자체 쓰레기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한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별표 4의 쓰레기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 을 “제16조” 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조” 를 “시행령 제8조”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표 2) <개정 2020. 10. 5.>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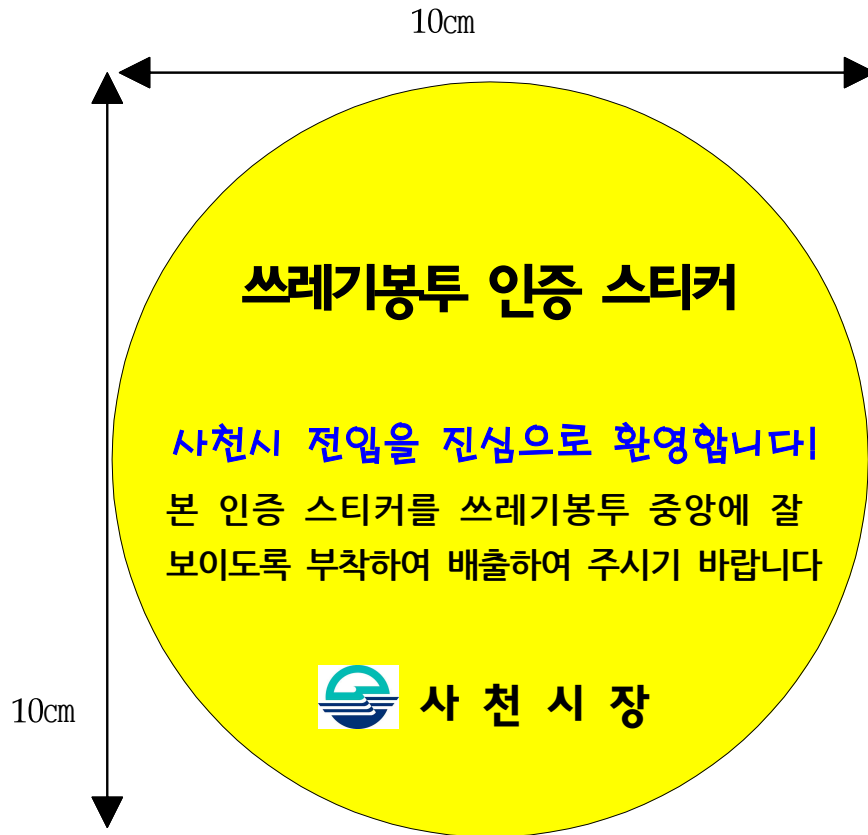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골판지 등	○ 종이 이외의 부분(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우유팩, 음료수팩, 종이컵	○ 이물질(음료물)을 제거한 후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종이류와 함께 배출
고철·비철류	고철 (철사, 못 등 쇠붙이)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부탄가스 및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등 유리병	○ 병뚜껑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맥주병, 소주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내열식기, 도자기, 사기그릇, 거울, 유리, 기름병, 화장품병은 제외
의류	면·섬유류 등 의류	○ 세탁 후 묶어서 배출(속옷 및 신발 제외) ※ 재활용가능한 의류는 재활용사업자(단체)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이불, 신발, 속옷은 재활용품이 아님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폐비닐류, 페스티로폼, 그 밖의 플라스틱 재질 재활용가능 품목	○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페스티로폼·발포스티렌, 1회용 봉투·도시락·컵라면 용기, 과일상자내의 완충칸막이, 보호막은 제외
소형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시장이 고시한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아파트관리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배출
영농폐기물	폐비닐류 및 농약용기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 폐비닐은 개인 및 마을(단체)별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 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전용 수집용기 또는 포대에 넣어 배출
기타	폐형광, 폐건전지 등	○ 아파트관리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어지지 않게 배출(백열전구, 액상 축전지는 재활용품이 아님)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공동주택, 마을, 단체 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배출하는 경우 품목별로 비닐, 포대, 그물망 등에 담아서 배출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별표 4] <개정 2020. 10. 5.>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0. 5.>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0. 5.>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0. 5.>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전입신고일			연 락 처		
	주소	전입 전				
		전입 후				

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

규 격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0. 5.>

전 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접수대장

연 번	성 명	주 소	전 입 신고 일	스티커 수 량	배 부 자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1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조례 제171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천시의회 의장
3.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4. 사천경찰서장
5. 군사안보지원부대 관계자
6. 사천소방서장
7. 통영해양경찰서장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한다.

제8조 중 “관할지역내”를 “관할지역 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규칙 제75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표】 <제정 2020. 10. 5.>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과태료로 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50	100	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차·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50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규칙 제75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제2조의 제목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을 “(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으로, “법정적립액” 을 “최저적립액” 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을 “「지방세법」에 따른” 으로, “평균년액” 을 “평균연액”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를 “제1항에 따라” 로, “국가안전관리계획” 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으로, “재난관리기금” 을 “기금”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결산후 1월” 을 “기금결산 후 1개월” 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로, “의거”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를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로, “기한내” 를 “기한 내” 로, “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30일전까지” 를 “30일 전까지” 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제1항 전단 중 “시지정금고” 를 “사천시 지정금고(이하 “시지정금고” 라 한다)” 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제1호 중 “별지 제4호 서식” 을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사업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재난관리기금 용자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별	남/여	신청자격	소유자·점유자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대표자)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기금 신청 내역	대상 시설물					
	위해 요인					
	기금사용 용도					
	소요비용 총액	금	원(₩)		
	용자신청 금액	금	원(₩)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2. 소요비용총액에 관한 입증서류
- ※ 용자금의 보증에 관련된 제출 서류는 사천시 지정 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0. 5.>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0. 5.>

재난관리기금 용자금 상환 연기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성별	남/여	
용자내역	용자금액	기 상 환		잔 액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용자일 등	용 자 일	년 월 일			
	만 료 일	년 월 일			
연기신청 내 역	연기기간	년 월 일까지			
	연기사유				
	용 자 금 상환계획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용자금 상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규칙 제75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5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 을 “제7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의한 판매소지정”을 “다른 판매소 지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 판매소 공급수불부를”을 “다른 수불대장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명의 변경신청서”를 “명의 변경 신청서”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					수수료 없 음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성 명	(남/여)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배출자와의관계					
배출현황	배출자성명	(남/여)	생 년 월 일	전화		
	배출자주소					
	배출장소					
	폐기물종류	폐기물량		톤	수수료	
자가운반계획	운반자성명	(남/여)	주 소			
	운 반 차 량	운 반 량		톤		
	운 반 기 간	운 반 장 소				
<p>「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p>사천시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p>						
신고인	성 명	(남/여)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자가운반계획	운 반 차 량	운 반 량		톤		
	운 반 장 소	폐기물종류				
	운 반 기 간	수 수 료				
<p>「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p>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0. 5.>

신 고 필 증

○ 접 수 번 호 :

○ 품 명 및 수 량 :

○ 처 리 수 수 료 :

○ 배 출 일 시 :

○ 배 출 장 소 :

상기 품명의 수량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0. 5.>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남/여)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발생장소				
신고내역	품 목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p>「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p> <p>읍·면·동장 귀하</p>					
담당자 확 인	수수료산정	금 원()			
	신고필증 발급번호	No			
수 수 료					
증지부착					
참고사항	<p>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p> <p>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p>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10. 5.>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취소(변경) 신고번호			배출 신고번호				
신 고 일 자			신 고 자	(남/여)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취소(변경) 사 유				
취소(변경) 내 역	품 명	규 격	수 량	기납부 수수료	환 불 신 청 액	비 고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환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장 귀하</p>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0.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대행 신청 업자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남/여)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영업종류		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구분명)	구역,면적 (주소,위치)	소유자 (관리자)	거 주 사 항		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	대 행 수수료	수 집 운반방법
			세 대 수	인 구 수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0. 5.>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남/여)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소위치 (소재지)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50px;">사천시장 귀하</p>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0. 5.>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0. 5.>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				결	담당자	팀장	소장
				재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판매소 위치 (소재지)			상 호 (영업내용)			
판매대상지역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상가(시장)지역() 자연마을()					
인근판매소와의 거리	동	서	남	북	비고		
	m	m	m	m			
타당성 여부		적합() 부적합() 검토대상()					
조사자 종합의견	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성명 (인)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0. 5.>

(앞면)

제 호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 지 정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 위치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0. 5.>

(뒷면)

제 호

변 경 사 항

지정연월일	상 호 및 명 의	확 인 (인)

영업상 유의사항

1.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0. 5.>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신 청 자				판 매 소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0. 5.>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일반봉투 및 마대

월일	상호	공급매수						보유량					
		계	5ℓ	10ℓ	20ℓ	50ℓ	마대	계	5ℓ	10ℓ	20ℓ	50ℓ	마대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음식물봉투

월 일	상호	공급매수								보유량									
		계	3l	5l	10l	20l	필 5	필 20	필 60	필 120	계	3l	5l	10l	20l	필 5	필 20	필 60	필 120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0. 5.>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일
판매자	성 명 (대표자)	(남/여)	생년월일	
	상 호		지정년월일	
	판매소 위치		전화번호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				수수료
				없 음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0. 5.>

일반차량폐기물반입(계량대장)

월 일	반 입 자				반입물량(톤)			부과금액
	주 소	성 명	성별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실제반입 량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0. 5.>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년월일	소속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재발급 사유및일시	회수사유 및 일시	비고	결재란	
									담당자	팀장

사 천 시 공 보

제690호

사천시 훈령 제392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개정 2020. 10. 5.>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평 생 학 습 센 터	평 생 학 습 팀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총괄 관리
		3. 시민평생교육 운영관련 업무
		4. 사천아카데미 교육 강좌 운영
		5. 평생학습 공동체 구성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7.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리
		8.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청사 관리
		9. 평생학습동아리 관리 및 지원
		10. 평생교육 프로그램별 수강생 등록 및 관리
		11.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u>12. 학점은행제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u>
		<u>13. 학습자 등록 및 학적관리</u>
		<u>14. 시험 및 성적관리</u>
		<u>15. 교·강사 관리 및 평가</u>
		<u>16. 학점은행제 연계 및 사후관리</u>
		<u>17. 센터내 사무, 일상경비관리 및 보안업무</u>
		<u>18. 센터내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u>
교 육 지 원 팀		1. 장학기금 구성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 인재육성 관련 업무
		5.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6. 교육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7. 동지역 학습관 운영에 관한 업무
		8. 기능대학관련 업무
		9.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10.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1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사항(고교수업료 지원)
		12.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지원팀	1.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2.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3.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사항
		4.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 및 관리
		6. 어린이도서관 시설 관리 및 운영
		7. 어린이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관리
		8. 시립 공공도서관 건립 업무
환경사업소	청소팀	1. 시가지 청소관련 업무
		2.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지도·단속
		4.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
		5.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시행
		6.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기획·조정
		7.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관한 사항
		8.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0.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13.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인상
		1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5. 청소장비 유지관리
		16. 1회용품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
		17.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 허가
		18. 청소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19.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당지출
		20.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수집·운반
		21. 폐자원 회수(전자제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22. 농업용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23. 불법투기감시용 CCTV설치
		24. 나눔장터 운영
		25. 헌옷수거함 관리 및 관련 업무 총괄 (공공용 시설물 내 행위는 시설물 관리부서 추진)
		26. 소내 서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업무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환경 사업소	청사 설팀	1.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 및 확장 사업
		2.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및 정비사업
		3.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폐기물 소각장 민간위탁 및 운영 관리
		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및 운영 관리
		6.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관리
		7. 대형폐기물 반입관리
		8.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 민원처리
		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내 공공시설물 관리
		10.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장 설치 사업
		11.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12.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운영 및 관리
		13.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
		14. 생활폐기물 반입통제 및 계량
		15. 매립장 반입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폐기 물관리 팀	1. 사업장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2.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4.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지도점검
		5.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6.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지도점검
		7.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8.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및 지도단속
		9.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처리자 교육관리
		10.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부적정처리 지도단속
		1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12. 사업장·건설·지정폐기물 전자인계서 관리(올바로시스템)
		13.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전용,임시)발급
		14. 소관 폐기물관련 행정처분(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15. 고물상(재활용업 포함) 영업관련 사항
		16. 폐슬레이트(폐석면) 처리비 지원 사업
		17. 하구쓰레기 수거사업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상하수도 사업소	운영 지원 팀	1. 상·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재산관리
		3. 상·하수도 지방채 관리
		4. 상·하수도 사용료·물이용부담금·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및 결손처분
		5.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6. 위탁 상수도의 지원·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부과, 검침, 민원처리)
		7. 상·하수도요금 및 누수감면 처리
		8. 상수도 위탁 운영대가 지급
		9. 부정 상·하수도시설 단속 및 상·하수도 통계관리
		10.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폐지) 및 수질검사
		11.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관리 및 자금운영
		13.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출납 및 결산
		14. 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경영 평가 업무
		15. 상·하수도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16.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
		17. 상·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18.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19. 지하수계측기 검침 및 유지관리
		20. 물건의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21. 배수설비설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감독
		22. 각종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증금 관리
		23. 소내 서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
		24. 소내 공무원·기간제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수시 도설	1. 중수도 관리
		2. 급수민원(신설, 개조 등 신청민원) 처리
		3. 급·배수관 관망도 작성 및 관리
		4. 소화용(상수도)수도설치에 관한 사항
		5. 상수도 관리시스템(GIS) 유지 관리
		6. 상수도 시설정비 기본계획 수립
		7.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 시설 팀	8. 수도관련 재해대책		
		9. 상수도시설 확장 및 신설 사업		
		10. 위탁상수도의 지원·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급수민원, 누수방지, 수도계량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		
		11. 급수공사 관급자재 관리		
		12. 상수도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13.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4. 수도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15. 수도시설폐지 및 철거에 관한 사항		
		16. 저수조 청소업 신고, 지도·감독		
		17.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지도·점검		
		18. 소규모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9.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20.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1.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22.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23.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		
		하 관 리	수 팀	1.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2. 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3.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4. 공공하수·가축분뇨·분뇨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관리 및 지도점검
				5.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7.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리
8.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징수				
10. 공공하수·가축분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개·보수사업				
11.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업무				
1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관리				
13.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신청관리				
1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작성관리				
15. 공공하수처리시설(삼천포,사천,용현,곤양,서포) 중계펌프 장, 차집관로 증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단순관리대행 사업계획 수립 및 대행비 지급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 관리 수 팀	17. 단순관리대행협약서 추가 및 변경협약에 관한사항		
		18. 공공하수·가축분뇨·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19. 공공하수·가축분뇨·분뇨처리시설 전기사용관리 및 사용료 납부		
		2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및 시설물 보수·유지관리 (5천만원 이상 사업)		
		2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22. 공공하수도 준설		
		23. 배수설비 설치신고·협의		
		24. 배수시설 설치공사 설계 및 감독·준공검사		
		25. 배수설비 대행업체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6.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		
		27. 하수도 관리 시스템(GIS)유지관리		
		28. 공공하수도 시설물 인수(택지개발 등)		
		29. 하수도 대장 작성 및 관리		
		30.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제외)		
		31. 중권역(낙동강)유역 및 댐상류 하수도시설 업무		
		32.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CCTV 운영 및 장비관리		
		33.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		
		34.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업무		
		35.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업무		
		36. 기간제근로자(하수민원처리)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하 수 시 설 수 팀	하 수 시 설 수 팀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관련 업무
				3.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4.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5. 처리구역확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업무
				6.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업무
				7.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 업무
				8.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업무
				9. 하수처리장 확충(신·증설, 개량)사업 추진 업무
				10. 도시침수대응사업 추진 업무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 시설 팀	11.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 업무
		12. 읍·면·동 건의 및 주민숙원사업 업무
		13.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 업무
		14.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관리 업무
		15.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업무
		16. 하수도공사 지도·감독 지원업무(동지역)
		17.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및 지도점검 업무
		18. 하수도 통계 업무
		19. 비관리청의 하수도 설치 허가 및 감독
		20.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업무
		21. 공공하수도 설치 등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사천시 고시 제2020-33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m ²)		
모레 (신향) 지구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일원	해일 위험	가	15,000	조위상승과 강우 유출에 의한 내수배제불능으로 침수피해 등의 재해 발생	신규

2. 기 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3. 이해관계인은 사천시 재난안전과(055)831-3315)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1부. 끝.

사 천 시 공 보

제 690 호

